

총리령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소비자생활협동조합(이하 “생협”) 활성화를 위해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,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며, 보건·의료생협의 비조합원 공급고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(안 제1조의2)

- 1) 법제처에서 추진한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로,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.
- 2) “검안서”를 “검안서(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)”로, “표시하여야”를 “표시해야”로 수정.
- 3) 국민의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.

나.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가능 비율 확대(안 제5조 제1항 제1호)

- 1) 생협 상품의 판매·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생협 이용가능 비율 확대가 필요함. 민·관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방안(‘21. 9. 30.) 중 정부 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.

- 2) 비조합원 이용 가능 범위를 10%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20% 상한으로 조정.
- 3)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 공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협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.

다. 보건·의료생협의 비조합원 공급고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(안 제5조 제5항)

- 1)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,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, 비조합원 공급고에 대하여 시·도지사 혹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. 다만,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문구가 “물품”으로 되어 있어 신고의무가 일반생협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던바, 보건·의료생협의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2) 비조합원에게 보건·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보건·의료생협이 그 공급실적을 시·도지사(연합회의 경우 공정위)에게 신고할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시행규칙 개정.
- 3) 보건·의료생협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, 보건·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3. ~ 3. 14.)

3) 행정규제 :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중 “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”를 “진단서·검안서(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)·증명서”로, “표시하여야”를 “표시해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10의”를 “20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46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·의료 서비스를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-2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물품”을 “물품 또는 용역”으로, “별지 제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 또는 제3-2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비조합원 보건·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 신고서

※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3일
신고 조합	명칭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신고 내용	전년도 총 공급고 *공급고는 매출액을 의미	각 의료기관·매장·사무실별 매출액을 각각 기재합니다.		
	비조합원 대상 공급고			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, 제67조제1항 단서, 제78조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2항,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조합원 보건·의료 서비스 공급 실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이사장)

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전년도 총 공급고 증빙자료 1부 2. 비조합원 대상 공급금액 증빙자료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보건·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)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·의료사업을 하는 조합(이하 “보건·의료조합”이라 한다)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「의료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<u>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</u> 및 처방전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<u>표시하여야</u> 한다.	제1조의2(보건·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진단서·검안서(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)·증명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표시해야</u> ----.
제5조(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)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·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	1. ----- ----- ----- -----

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. 다만,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(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)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.

2. ~ 8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8조(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

----- 20의 -----

-----.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46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·의료 서비스를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-2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물품 또는 용역 -----

별지 제3호 또는 제3-2호서식-

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